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금천구의회의장



1.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2.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명예퇴직 예정일 : 해당 월의 말일
※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 제출 시, 다음번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3.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관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 소관기관(부서)장은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구의회 의장(의회사무국)에게 제출

4. 대상자의 제한

-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함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4)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대상자의 심사결정

-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여부 결정
 - ※ 소관기관(부서)장과 비위사실여부를 조사하는 부서에서는 명예퇴직 제한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구의회사무국으로 통보

6.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7. 행정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
-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용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부서명 :)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정 년 퇴직일	정 년 잔여기간	근속기간		수당지급 예정액 (호봉)	퇴직당시 월봉금액
					정 규	연금법상		

※ 전경력 합산의 경우 연금법상 합산여부 반드시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부서장) 직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5., 2018.12.3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

신청인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small>(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small>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기재란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⑫ 정년 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임기제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년 월
소속 기관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기재란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감사담당 (인)
----	----------	----------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작성 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소속 기관에서 직접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심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 기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해당여부 기재)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해당여부 기재)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해당여부 기재)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해당여부 기재)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해당여부 기재)
<p>조사 작성 및 확인자</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직위(소속국장) 직급 성명 ① </p>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
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용됩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결 재

대상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퇴직사유				

■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장 소	
○ 교 관	
○ 교육 내용	<p>(예시)</p> <p>퇴직자 보안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사항임 2.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말 것 3.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할 것

■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공무원 퇴직(전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 . . 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무 중 알게 된 일체의 업무내용이 직무상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경찰업무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재직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 급 :
성 명 : (인)

명예퇴직자 확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 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행정지원과에 신고하겠습니다.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

마.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퇴직 후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년 월 일

명예퇴직 신청자

(인)

금천구의회의장 귀하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삭제 <2007. 10. 4.>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